학생지도비지급규정 4-4-3

규정번호 4-4-3
제정일자 1988.1.1
최근개정 2009.2.26
개정차수 3차 개정
관리부서 예산감사팀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리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학생의 과외활동 및 각종 생활지도에 전력하여 건실한 교육성과를 이루는데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학생지도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학생지도내용) 학생지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학생생활의 상담 및 지도
2. 교외에서의 학생집단 지도 또는 지도계획의 작성과 심의
3. 기타 총장의 명에 의한 수시적 집단 및 개별지도

제3조(지급대상 및 시기) 학생지도비는 전임교직원에게 학기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, 특별한 경우에는 그 지급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.

제4조(지급액) 학생지도비 지급액은 매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책정하며, 이사장이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.

제5조(지급대상의 제외 및 감액) 학생지도비의 지급제외 및 감액대상자는 정관 제47조와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

제6조(삭 제)

제7조(삭 제)

제8조(근무기간의 계산) 신규임용 및 퇴직자의 학생지도비의 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제9조(보칙)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6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학칙) <2009.2.26 개정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규정의 개정) <1> - <41> <생략>

<42> 학생지도비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3호, 제4조, 제9조 중 “학장”을 각각 “총장”으로 한다.

<43> - <102> <생략>